

## 「소셜벤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셜벤처 및 구직활동 중인 청년의 신규 고용 촉진을 위한 『소셜벤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참가기업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07월 30일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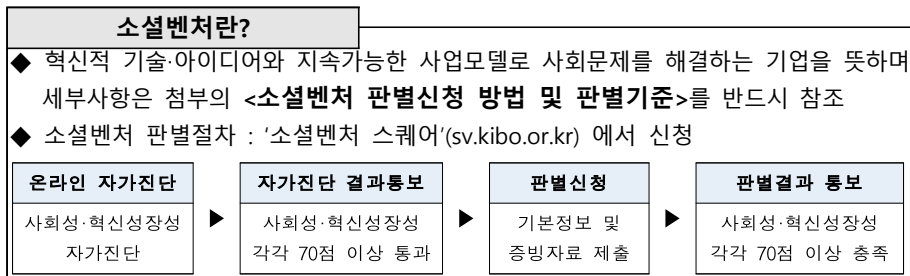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청년 일경험 지원) 채용여력이 부족한 소셜벤처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미취업 청년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여 인력확보를 도모

#### □ 지원 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1인 이상인 소셜벤처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 중 해당기간 신규 청년\*을 채용한 기업  
(2020년 7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익창출 및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요건을 갖춘 수익구조를 뜻하며 세부사항은 첨부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를 반드시 참조
- ◆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절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 에서 신청

### ※ 소셜벤처 판별 및 (예비)사회적기업 제외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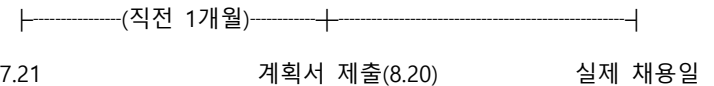
◆ 아래 사업을 위해 소셜벤처 판별을 이미 받은 기업

- ① '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판별 기업(998개)
- ② '19년 예비창업패키지(오픈바우처) 로 '20년도에 판별받은 기업
- ③ '20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과제)
- ④ '20년 환경부와 SK이노베이션이 함께하는 환경분야 소셜 비즈니스 발굴 공모전
- ⑤ '20년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투자용)
- ⑥ '20년 에너지 기술 수용성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에너지기술평가원)
- ⑦ '20년 디지털·온라인 전환 및 확대지원사업

- (청년채용) 참여 신청을 승인 받은 기업 중 '20.7.30부터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기업의 참여 신청 전 청년 채용 시엔, 채용일 직전 1개월 전부터 감원이 없어야 해당 청년에 대해 지원 가능

- \* 동 사업 참여 및 수급을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 해고 및 재고용 방지 목적
- \* 고용조정이직: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예시) >



- \* 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인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이후의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 **감원한 참여청년 외 감원된 인원수만큼 다른 참여청년에 대한 지원금도 중단**

\* **(예시) 동 사업으로 A, B, C 3명을 채용하여 지원을 받던 중 A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A에 대한 지원 중단 + 추가 1명(B 또는 C)에 대한 지원 중단**

\* 기업이 지원 중단을 희망하여 청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경우 추가 채용을 통한 계속 지원 불가

- **(참여제한)** 정부·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학교, 소비향락업, 근로자과건 및 근로자공급업체,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중대재해 등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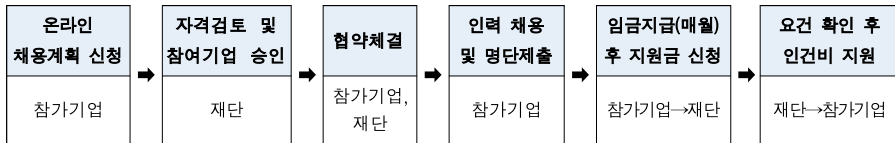
\* 명단 공개기간(3년) 내 참여 불가

\*\* 명단 공표일(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 **(지원규모)**

지원분야	인원	비고
청년 일경험 지원	150명 (최대 기업당 30명)	직문분야 제한 없음

□ **지원 절차**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온라인 신청) → 운영기관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참가기업 지원협약 체결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통보
- **(지원금신청)** 기업은 청년채용 및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신청

- **(지원금지급)**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지원금 지급(e나라도움)

**2. 지원개요**

**2 소셜벤처와 (예비)사회적기업 청년인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청년에게 소셜벤처와 (예비)사회적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노동시장 경력 개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직무 경력을 쌓고,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 경제 침체로 인해 신규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20년 한시로 단기 채용 여력을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에 기여

□ **사업내용**

- **(참여대상)** 만 15~34세 청년(대학생 가능)  
\* 군필자의 경우 군복무기간만큼 연령 연장(최대 만 39세)
- **(지원인원)** 150명(기업당 최대 30명)
- **(지원한도)** 참여신청 전월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최대 20%(30명 상한)

<규모별 지원한도>

규모	지원한도	비고	별도 승인시
5인 이상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20% (최대 30명)	예시) 150인 기업: 최대 30명	최대 2배 (최대 60명)
5인 미만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20%	50인 기업: 최대 10명 3인 기업: 최대 1명	최대 2배

\*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 0.1 → 1명)

\*\* 사업확장 등 필요시 운영기관 승인 거쳐 최대 40%까지 가능(30명 상한)

- 기업이 청년의 자발적 퇴사, 조기 정규직 전환에 따라 청년 추가 채용시 잔여 지원 기간 만큼 지원

\* (예) 청년 A 3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3개월 지원)

→ 청년 B 추가 채용 및 3개월 지원 가능 (6개월 - 3개월 = 3개월)

\* 청년은 이직시 다른 기업 취업시 지원 가능

○ (지원수준) 1인당 최대 월 80만원(최대 6개월) 및 권리비용(10%)

주 당 근로시간	지원금 총액	인건비	간접노무비
30시간 이상	88만원	80만원	8만원
20시간 이상	66만원	60만원	6만원
15시간 이상	44만원	40만원	4만원

○ (근로조건) 2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필수

\* 정규직 전환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참여 가능(요건 충족시)

\* (20년) 주 40시간 기준 월 179만 5,310원, (21년) 월 182만 2,480원

○ (교육) 멘토 지정, 자체 업무지도·교육 등\* 실시

\* 업무지도, OJT 방식 등 가능, 교육 일시·내용은 월 1회 기록, 지원금 신청시 제출

○ (근로기간) 최대 6개월

\* 1개월 미만 근무시 지급하지 않음

\* '20년말까지 채용한 인원내 대해 최대 6개월 지원

○ (중복참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과의 중복참여는 불가능하며, 중도 중단·탈락 후 사업간 교차참여도 불가

\* 예시) 디지털 일자리 3개월 참여 후 일경험 지원사업 3개월 참여 불가

###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공고일 ~ '20년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워크넷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 운영기관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중기부-소셜벤처기업 청년인턴)' 지정하여 신청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등 \* 서식 목록 참고

[서식 제1호 또는 제3호]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별로 양식 상이함

[서식 제2호 또는 제4호] 사업주 확인서 \*사업별로 양식 상이함

[서식 제3호] 인사 담당자 또는 멘토 이력사항

[제출서류] 소셜벤처 판별확인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2년), 4대 보험 납부확인서,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시), **중소기업확인서 (해당시)**

### 4. 신청시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사업 신청은 기업의 대표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직원이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 활용하여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수정 등 모든 신청절차를 신청기간까지 완료되어야 함

○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신청·접수기한 이후에는 제출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수정할 수 없고, 운영기관과 협약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 내용을 축소할 수 없음

동 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이 법규 또는 본 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신청자격 및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업 선정(협약)취소,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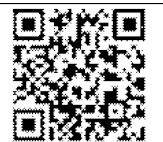
### 5. 문의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소셜벤처 프로젝트팀

- sv@koef.or.kr, 02-2156-2357/2354

- 카카오톡 플러스 소셜벤처 육성사업 검색  
채팅URL [http://pf.kakao.com/\\_ixjYxjxb/chat](http://pf.kakao.com/_ixjYxjxb/chat)

\*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급적 플러스 친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러스친구  
바로가기

## 참고 1 소셜벤처 판별 신청 방법

<판별 신청>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 스쿼어(sv.kibo.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사회성 판별표와 혁신성장성 판별표 각각 70점 이상인 기업을 소셜벤처로 판별

< 사회성 판별표 > 누적점수 70점 이상이면 사회성 판별 통과

사회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비고	
1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 또는 인증받은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100점	
2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3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중인 기업(단, 기획단계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실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70점	판별근거 입력
4	비영(B-corp) 인증을 받은 기업	50점	
5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 <sup>1)</sup> 되어 있고, 추진 <sup>2)</sup> 중인 기업	50점	정관 외 기타 중빙 <sup>3)</sup> 은 50%만 인정
6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 <sup>2)</sup> 하고 있는 기업	50점	
7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이윤의 배분」 및 「청산 시 처분제한」 원칙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 <sup>2)</sup> 하고 있는 기업	20점	
8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 <sup>4)</sup> 이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20점	
9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 <sup>4)</sup> 이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통해 육성된 팀(조직)이 창업한 기업	20점	
10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외부기관과의 MOU, 상생협약, 협력관계 등 사업의 주목적과 관련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있는 기업	10점	
11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조직(기업의 해당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10점	2년 이상 5점 부여
12	대표자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	5점	
13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또는 소셜벤처 관련 활동(대학 동아리, 대학내창업, 공모전 등)을 수행	5점	

구분	3항 판별근거 입력
◆ 사회적 문제 <sup>1)</sup> 해결	제품·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간략히 기술
◆ 제품·서비스 기획단계부터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창출이 의도 되었는지? ◆ 그리고, 그것이 실제 제품에 적용되었는지?	근거를 간략히 기술 (사업계획서, 특허 공개전문 <sup>2)</sup> , R&D 계획서, 실제 제품 확인 등을 통해 평가자가 직접 확인)

< 혁신성장성 판별표 > 누적점수 70점 이상이면 혁신성장성 판별 통과

혁신성장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비고	
1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100점	
2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15%)	100점	
3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4	민간 임팩트 투자기관 <sup>5)</sup> 의 본계정에서 3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50점	
5	기술력 또는 상품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증 <sup>6)</sup> 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50점	
6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기술평가를 받거나 심사후 등록된 실용신안권, SW프로그램저작권)을 보유(실시권 포함)하고 있는 기업 * 단, 창업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도 인정	40점	1건 40점, 2건부터 건당 5점 추가
7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sup>7)</sup> 가 5% 이상인 기업(최근 2년 평균) * 단, 창업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신청일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 금액 <sup>8)</sup> 으로 확인	40점	
8	최근 5년 이내 세계적 규모의 창업경진대회 <sup>9)</sup> 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40점	
9	법령에 의해 등록 또는 지정된 창업지원플랫폼 <sup>10)</sup> 으로부터 현재 입주 또는(전문)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	30점	
10	중앙정부의 R&D기술개발사업에서 성공관정을 받은 기업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20점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10점
11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주관 전국 규모의 창업경진대회 <sup>11)</sup> 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20점	
12	기업(또는 재단) <sup>11)</sup> 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0백만원 상당 이상의 자본투자 또는 지원을 받은 기업	20점	
13	중앙정부의 "혁신성장 공동기준" <sup>12)</sup> 에 따른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20점	
14	자연계 대학교수, 자연계 박사, 기술사 또는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가 창업한 기업	10점	

- 예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의 자유 추구 등
- 관련 증빙자료는 기업 스스로가 제출해야 함(단,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증빙없이 점수 부여)
- 정관 외 미선선전문, 사업계획서, CSR 보고서 등을 말함
-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지속한 민간 조직에 해당함
- 임팩트금융국가자문위원회(NAB), 한국임팩트투자네트워크(KIIN) 등 임팩트투자 단체의 회원일 것
- 산업통상자원부(舊 지식경제부)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10대신기술상,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첨단기술기업,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인증(IR52장영실상, NET, NEP)을 받은 기업 등

**용 어 설 명**

- 임팩트금융국가자문위원회(NAB; National Advisory Board) :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구로서 2018년 2월 출범하였고, 임팩트 투자기관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임팩트 투자시장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함(qsqii.org/nabs/korea).
- 한국임팩트투자네트워크(KIIN, Korea Impact Investing Network) : 국내 주요 임팩트투자자, 벤처투자기관, 유관기관이 모여 조직한 네트워크.
- IR52장영실상(www.ir52.com) : IR52장영실상은 국내에서 신규 개발되어 최초 판매일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제품 중 기술성, 경제성, 산업과급효과 등이 뛰어난 제품을 발굴하여 선정하고,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직접 시상하는 상임.
- NET(New Excellent Technology), NEP(New Excellent Product)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 또는 신제품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신기술의 사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증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가 담당함.
- 녹색기술인증(www.greencertif.or.kr)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대한 인증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기술우수성과 녹색성을 심사하여 선정함.
- 대한민국 10대신기술(산업통상자원부) : 기계항공, 전기전자 등 6개 분야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의 우수성, 국내산업 파급효과, 성과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 매스챌린지(masschallenge.org) : 높은 잠재력을 가진 신생기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0년 설립되어 보스턴 본부와 5개국 7개 도시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상업성과 이윤창출보다 사회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소셜임팩트 액셀러레이터임.
- 프렌치 테크 티켓(seoul.lafrenchtech.com) : 전 세계 혁신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프랑스로 유입하기 위해 2015년6월 프랑스 공공기관이 마련한 프랑스 디지털 비즈니스 육성 정책으로, 국가별 프렌치 테크 허브가 프렌치 테크 티켓을 실시하고 있음.
- 갯인더링(getinthering.co) : 유럽 및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경연을 벌이는 글로벌 스타트업 경진대회로 170개국에서 매년 개최됨.
- GSEA : 전 세계 창업가 기구 EO(Entrepreneur's Organization)가 대학생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최하는 글로벌 대학생 기업가 창업경진대회임.

**※ 소셜벤처 판별기준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02-3407-2900)로 문의**

- 7) 연구개발비 = 재무상태표상 개발비 증가액(당기개발비-전기개발비) + 손익계산서상 경산연구개발비 및 개발비 상각액 + 제조원가명세서상 경산연구개발비
- 8)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에 관련한 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소모성 기자재비, 시약/재료비, 기술도입비, 기술정보비, 외부지원연구비, 기타 관련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 금액
- 9) 글로벌 소셜벤처 경진대회(Global Social Venture Competition), 매스챌린지(Mass Challenge), 프렌치 테크 티켓(French Tech Ticket), 갯인더링(Get In the Ring), GSEA(Global Student Entrepreneur Award) 등 1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창업경진대회를 말함.
- 10) 창업기획사(엑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
- 11) K-스타트업(창업리그, 학생리그, 국방리그, 글로벌리그) 또는 훗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 본선이상 입상자, 지식재산 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등
- 12) "혁신성장 공동기준"이란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미래 혁신성장 분야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정의한 것임

**참고2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신청 방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절차**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등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기업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하면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신청 전에 반드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사전 상담 및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기준 문의처: 1800-2012 (해당 권역 지원기관 자동 연결)

# 『소셜벤처 청년 신규 일자리 사업』 서식 목록

【서식 1】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2】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사업주 확인서

■ [서식 1]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접수일자
------	------------------	------

###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업종		피보험자수	

### 2.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 3. 채용 계획

채용예정인원		명				
근무시간 *주15시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	급	여	원
근무장소		자격증 * 필요시 기재				
수행업무						

### 3. 운영 계획

직무수행계획	* 청년 채용 이후 수행할 업무 내용을 작성
교육훈련계획	* 교육담당자 000, 교육내용 등 기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5인 미만 예외 기업 입증서류(해당시) 2. 중견기업확인서(해당시)
------	---

## 사업주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 (단, 벤처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예외 대상으로서 1인 이상인 경우 '아니오'에 체크)	[ ] 예 [ ] 아니오
②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 예 [ ] 아니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	[ ] 예 [ ] 아니오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예 [ ] 아니오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 예 [ ] 아니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 예 [ ] 아니오
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 예 [ ] 아니오
⑧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 ] 예 [ ] 아니오

### 지원제외 청년(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채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하)이 아닌 자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 ] 확인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계약직·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기준에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확인
③ 2개월 이상 근로계약, 4대 사회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 확인
④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	[ ] 확인
⑤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자	[ ] 확인
⑥ 다른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 ] 확인
⑥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자	[ ] 확인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 확인
⑧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 ] 확인
⑨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단,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 확인
⑩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 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 예 [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